

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 중 “그 조례·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.”를 “그 조례·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.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</u></p> <p>제4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구청장은 소 관 규제의 명칭·내 용·근거·처리기관 등을 <u>제7조에</u>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규 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</u></p> <p>제4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제9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규제영향분석서)</u></p> <p>① <u>구청장은 입법안 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규제영 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규제의 신설·강화 의 필요성</u></p> <p>2. <u>규제 관련 일반 현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안과 같음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황

3. 규제 신설·강화에
따른 갈등 상황 및
대책

4. 규제 신설·강화에
필요한 행정기구·
인력·예산 및 그
확보방안

5. 그 밖의 관련 참고
자료

② 구청장은 「대구
광역시달서구 자치법
규의 입법예고에 관
한 조례」 제2조에
따른 입법예고를 할
때에는 입법예고문과
함께 제1항에 따른
규제영향분석서를 주
민에게 공표하여야
한다.

③ 입법예고 후 제출
된 의견은 반영 여부
를 검토하여 규제영
향분석서에 반영하
고, 의견을 제출한 사
람에게 그 처리 결과
를 알려야 한다. 다

만, 단순 건의나 처리
결과가 필요하지 아
니한 사항에 대해서
는 그러하지 아니한
다.

<신 설>

제7조(규제의 재검토)
조례·규칙을 제·개
정하는 경우에는 그
입법안에 등록된 규
제 또는 신설되는 규
제에 대하여 5년 이
내의 범위에서 재검
토기한을 설정하여
그 조례·규칙에 규
정할 수 있다.

제7조(규제의 재검토)
조례·규칙을 제·개
정하는 경우에는 그
입법안에 등록된 규
제 또는 신설되는 규
제에 대하여 5년 이
내의 범위에서 재검
토기한을 설정하여
그 조례·규칙에 규정
하여야 한다. 다만, 존
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
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
지 않다.

제6조 ~ 제9조 (생
략)

제8조 ~ 제11조 (현행
제6조부터 제9조까지
와 같음)

제8조 ~ 제11조 (개정
안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 회의) ①
~ ④ (생 략)
⑤ 위원회는 제7조
각 호의 업무수행을
위하여 관계 공무원,
이해관계인 및 관련

제12조(위원회 회의) ①
~ ④ (현행과 같음)
⑤ ----- 제9조 --

제12조 (개정안과 같음)
⑤ (개정안과 같음)

<p>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, 관련 자료 제출 요청, 현지 조사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<p><u>제11조</u> ~ <u>제13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3조</u> ~ <u>제15조</u> (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 지와 같음)</p>	<p>제13조 ~ 제15조 (개정 안과 같음)</p>